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 방법·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 제27조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술육성주체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서식, 통보 기간 등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나.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를 기간, 방법 등 절차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제2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은 제26조제2항 각호의 내

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을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서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자 (기술육성주체)	기관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Email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소속 국가		기관명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내용	요청받은 정보의 유형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상세 내용	정보범위	[] 참여인력 () [] 연구성과 () [] 경영정보 ()
		특이사항 ³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해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통보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별지 제2호서식 참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신청서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기술육성주체)	기관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Email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소속 국가		기관명		
	요청 사유		요청 기한	년 월 일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	제공 정보 유형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상세 내용	정보범위	[] 참여인력 () [] 연구성과 () [] 경영정보 ()		
		특이사항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제공 방법	회의(대면, 화상), 전화, 전자메일 등			
사전협의 전 체크리스트	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 정보입니까?			[]	
	2.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3.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 중 국익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등 보안사항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4.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5.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제공이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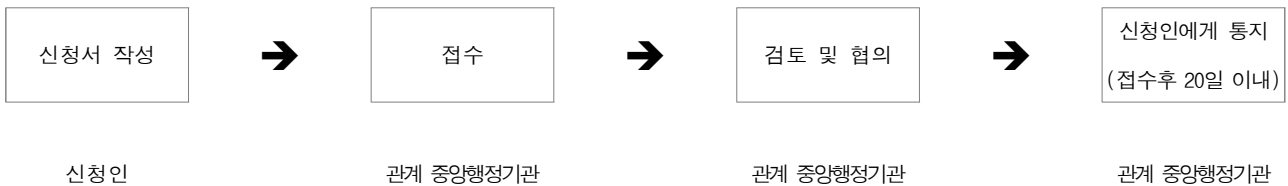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이 요청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 사실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협의를 신청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단, 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생 략)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 ----- ----- ----- ----- ---- <u>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기술육성주체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
<u><신 설></u>	④ <u>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u>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6조의2(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제2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은 제26조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의 신청을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	
연 락 처	(044) 202 - 6761